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폐기물관리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,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자원재활용 실행계획”을 “자원순환 집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”을 “(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”으로, “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”을 “고려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

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

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<u>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<u>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</u>」,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과 「<u>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<u>구청장은 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</u>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「<u>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</u>」,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및 「<u>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</u>은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
총괄 조정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· 5. (생략)

제3조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시 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자원순환 집행계획-----  
-----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서울특별시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고려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-----  
-----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이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  
폐기물배출자

② (생략)

제7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

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 
배출자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내에 10 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·징수가 위법·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

<삭 제>

보)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

<삭 제>

리)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12조(과태료 귀속) 과태료는 부과·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,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.

<삭 제>

<삭 제>